



ESG

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

1	3
문서번호	DIS-ESG-S06
제 정	2022.10.01
개정번호	0

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동원산업주식회사(이하 회사라 한다)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공정거래 자율준수"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공정거래 관련 법령"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·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.

제 3 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회사의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.

제 4 조(임직원의 의무)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자율준수의지 선언) 전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교육의 실시)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
2.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
3.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4.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7 조 (모니터링 실시) 각 부서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 8 조 (내부제보시스템 운영)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